

읍·면·동체육회 규정



당진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

제정 2022.06.29. 제2차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당진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제3항 및 제36조 내지 제37조에 의한 체육회의 지회인 당진시 읍·면·동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해당 읍·면·동명을 포함하여 ‘○○체육회’로 명칭을 정해야 하며,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목적) 읍·면·동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 읍·면·동민화하여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지도자 및 선수 양성으로 읍·면·동 및 당진시의 체육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소재지) 읍·면·동체육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읍·면·동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읍·면·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 동호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읍·면·동내 각종 종합체육대회 및 동호회 체육대회의 개최
3. 도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선수선발 지원
4.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5.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
6.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7.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8. 읍·면·동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의사업
9.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읍·면·동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 직) 동호회는 읍·면·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동호회의 읍·면·동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동호회는 읍·면·동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읍·면·동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읍·면·동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읍·면·동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할 수 있는 권리
5. 읍·면·동체육회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 ② 동호회는 읍·면·동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읍·면·동체육회의 규약,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읍·면·동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제7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읍·면·동체육회는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동호회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읍·면·동체육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60일 이상 장기간 동호회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중앙 체육기구, 도 및 시종목단체와의 분쟁
4. 동호회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⑤ 체육회가 「읍·면·동체육회규정에 따라 읍·면·동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요구한 때에는 읍·면·동체육회는 30일 내에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읍·면·동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동호회는 읍·면·동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동호회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읍·면·동체육회는 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읍·면·동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동호회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읍·면·동체육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읍·면·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9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5조에 따른 동호회 조직의장을 대의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일 경우, 동호회의 사무장을 추가하여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③ 읍·면·동체육회가 동호회조직이 적어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동호회에서 추천한 자(등록회원) 1명이 대의원이 된다.
- ⑤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⑥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등록회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⑦ 제6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읍·면·동체육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읍·면·동 체육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동호회의 가입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읍·면·동 체육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전·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2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읍·면·동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읍·면·동 체육회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임원은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읍·면·동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읍·면·동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전·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읍·면·동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1조(임원) ① 읍·면·동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부회장중에서 상임부회장 또는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3. 이사 19인 이상 35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 ② 제1항 2호 내지 3호에 대하여는 읍·면·동체육회에서 임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임원으로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은 해당 읍·면·동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사의 수는 총회 의결로 20명 이하로 증원 할 수 있다.

제22조(회장의 선출)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읍·면·동체육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읍·면·동체육회별 기탁금의 금액 등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로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읍·면·동체육회의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1.07.27.]

제24조(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

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1.07.27.]

제25조(기탁금 반환) ① 종목단체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기탁금을 회장출연금으로 귀속할 것을 결정하고, 그 조건을 선거공고에 게시하였을 경우 당선인의 기탁금은 읍·면·동체육회에 귀속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은 읍·면·동체육회에 귀속한다.
4.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읍·면·동체육회에 귀속한다.
-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읍·면·동체육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1.07.27.]

제26조(선거의 중립성)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1.07.27.>

- ②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1.07.27.>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읍·면·동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호선되되, 읍·면·동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은 충남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장선거와 도 및 시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동호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남체육회 및 체육회, 도 및 시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 동호회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읍·면·동 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 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4.11. ‘20.09.22>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4.11. ‘20.09.22>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4.11. ‘20.09.22>

제28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읍·면·동 체육회는 가급적 학교체육 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을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은 체육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시교육지원 청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1.07.27.‘>

⑦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⑧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50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읍·면·동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 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읍·면·동 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읍·면·동 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임원이 읍·면·동 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동호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읍·면·동 체육회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읍·면·동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1.07.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제한을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신설 ‘21.07.27.’>

⑧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신설 ‘21.07.27.’>

⑨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신설 ‘21.07.27.’>

⑩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19.10.30. ‘21.07.27.’>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1.07.27.’>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체육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체육관계단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관계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및 지방자체단체 의원

⑤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군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2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 정관 제37조 제3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개정 ‘21.07.27.’>

2.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읍·면·동체육회의 임원 또는 동호회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동호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읍·면·동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동호회

제34조(동호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원은 동호회로 조직한다.

② 읍·면·동 동호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읍·면·동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동호회 임원의 인준 등) ① 읍·면·동 동호회의 임원은 읍·면·동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읍·면·동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읍·면·동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4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읍·면·동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9조(재원) 읍·면·동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읍·면·동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 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체육회,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6. 기타 수입금

제40조(잉여금의 처리) 읍·면·동체육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읍·면·동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중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읍·면·동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읍·면·동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관계단체의 임직원

2.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읍·면·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

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읍·면·동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읍·면·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 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연도) 읍·면·동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회계감사 등)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 ② 읍·면·동체육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호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6(읍·면·동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읍·면·동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동호회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호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③ 동호회가 읍·면·동체육회의 규약,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읍·면·동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해당 동호회에 대하여 규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면·동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도체육회장, 체육회장, 시장이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읍·면·동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읍·면·동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읍·면·동체육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읍·면·동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⑦ 읍·면·동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도체육회장, 체육회장, 시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동호회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읍·면·동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읍·면·동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9장 사무국

제47조(사무국) ① 읍·면·동체육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48조(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9조(해산) ① 읍·면·동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읍·면·동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당해 읍·면·동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0조(규약의 변경) ① 읍·면·동체육회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읍·면·동체육회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1조(규정 제·개정) ① 읍·면·동체육회는 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이외에 읍·면·동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제52조(규정의 해석 등) ① 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은 읍·면·동체육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읍·면·동체육회 규약을 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읍·면·동체육회의 규약과 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② 읍·면·동체육회가 체육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제한사항) 읍·면·동체육회가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체육회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4조(경영공시) ① 읍·면·동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읍·면·동 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2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진시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8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기는 2022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